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삼성KODEX 태양광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

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7.26 - 2012.12.31
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

신한금융투자, 대우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현대증권, 동양증권, 하이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 10. 15	제48조 (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)	①-1. 투자 운용인력의 변경	①-1. 투자운 용인력의 변경 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 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와 수익률을 말함)
2012. 12. 20	제12조 (투자신탁회계기간)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각호의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최초회계기간 :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

		한다.	간 2. 제 1 호의 회계기간 경과 후 회계기간 : 제 1 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3. 제 2 호의 회계기간 경과 후 회계기간 : 제 2 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매 1년간
2012. 12. 20	제39조 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)	5. 수익자 총회 관련 비용	5.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
2012. 12. 20	제40조 (투자신탁의 해지)	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해지하여야 한다.	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

	지하여야 한다.	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
	2.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	3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
	추 가	4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
	추 가	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	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(이하 "해지기준일"이라 한다)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	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

	상환금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	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.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	추 가	③제 1항제 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제 2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

